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1.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0월 2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98.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능(안 제2조)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위 원 장 :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위 원 : 영등포구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 회의(안 제5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 정 족 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의견청취 등(안 제6조)
 -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간사(안 제7조)
 - 간 사 :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설치근거에 의거 강제된 조치로써 우리구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 동안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각종 규제의 틀이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년월일 : 1998. 10.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능(안 제2조)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구성(안 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위 원 장 :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위 원 : 영등포구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다. 회의(안 제5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라. 의견청취 등(안 제6조)

-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마. 감사(안 제7조)

- 간 사 :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나. 합의사항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위원회참석수당 및 간담회비 예산 반영 300만원('99년 예산)

라. 조례(안) : 별첨참조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등포구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